「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)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8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 박 영 일

나. 제안이유

○ 해당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시민 체력 증진과 여가 활동에 따른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

지역간 균형있는 공공 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

○ 위　　치 : 옥계동 542번지 일원(대백운동장 내)

○ 대　　상 : 연면적 1,000㎡(지상1층)

○ 사업기간 : 2025～2027년

○ 총사업비 : 5,000백만원(도비 1,500, 시비 3,500)

※ 사업비 산출내역 : 공사비 4,600

설계비 250

감리비 150

○ 기준가격 : 5,000백만원

○ 주요시설 : 다목적체육관, 사무실 등

○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

- 전환사업 예산신청 : ‘24. 04월
-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: ‘24. 9월～10월
-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: ‘24. 10월～12월
- 건축기획용역 시행 : ‘25. 01월～06월
- 설계공모 시행 : ‘25. 07월～09월
- 설계용역 시행 : ‘25. 10월～ ‘26. 02월
-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: ‘26. 03월～ ‘26. 04월
- 공사 착공 : ‘26. 05월
- 공사 준공 : ‘27. 05월

## 라. 근거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#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| 구 분 | | | 건 수 | 수 량 | 금 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취득 | **계** | | 1 | 1,000 | 5,000 |
| | 1.매입 | **토지**<br>건물<br>기타 | | | |
| | 2.교환으로 취득 | 토지<br>건물<br>기타 | | | |
| | 3.기타 취득 | 토지<br>**건물**<br>기타 | 1 | 1,000 | 5,000 |

# 취득재산 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백만원)

| 구분 | 재 산 의 표 시 | | | 추정가액 | 취득 시기 | 사 유 | 재산 소유자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재산구분 | 소 재 지 | 수량(㎡) | | | | | |
| **계** | | | **1,000** | **5,000** | | | | |
| 취득 | 건물 | 옥계동 542번지 | 1,000 | 5,000 | 2027년 |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| 구미시 | 신축 |

# 위 치 도

## □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

○ 소재지 : 옥계동 542번지(대백운동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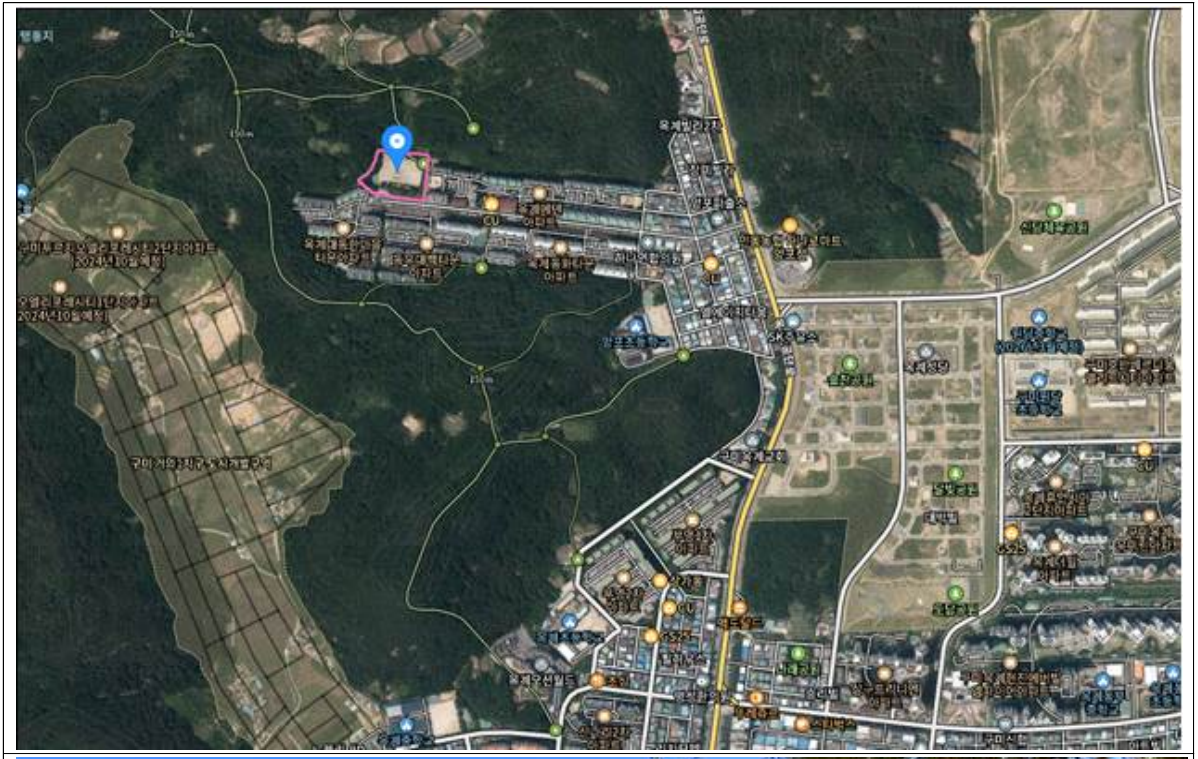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'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'은 지역 간 균형있는 공공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, 지상1층 건물을 신축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임.

- 본 사업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3년간 전체 사업비 50억원(도비 15, 시비35)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후 투자심사 제출 등 사업절차를 문제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,

- 집행기관에서는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관 건립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## 5. 토 론 요 지

- 체육관 건립 시 경기 대회가 가능한 체육관으로 설계 검토 필요.

## 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##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